

전자어음 거래약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변 경 (안)	비 고
<p>제1조 (생 략)</p> <p>제2조 (적용범위)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상생협력법) 및 동 법 시행령, 전자어음이용약관, 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약관,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.</p> <p>제3조 ~ 제18조 (생 략)</p> <p>제19조 (전자어음 발행)</p> <p>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하는 전자어음이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의 지급 수단일 경우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60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.</p>	<p>제1조 (좌 동)</p> <p>제2조 (적용범위)</p> <p>① ~ ② (좌 동)</p> <p>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상생협력법) 및 동 법 시행령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이하 하도급법) 및 동 법 시행령, 전자어음이용약관,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,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.</p> <p>제3조 ~ 제18조 (좌 동)</p> <p>제19조 (전자어음 발행)</p> <p>① ~ ④ (좌 동)</p> <p>⑤ 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하는 전자어음이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의 지급 수단일 경우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60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.</p> <p>⑥ 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하는 전자어음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 수단일 경우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60일 초과기간에 대한</p>	<p>문구 삽입 (관련 법령 추가)</p> <p>법률조항문구와 일치</p> <p>항 신설</p>

<p>제20조 ~ 제22조 (생략)</p> <p>제23조 (전자어음 배서) ① ~ ⑥ (생략)</p>	<p><u>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.</u></p> <p>제20조 ~ 제22조 (좌동)</p> <p>제23조 (전자어음 배서) ① ~ ⑥ (좌동)</p> <p><u>⑦ 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하고자 하는 전자어음이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60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.</u></p> <p><u>⑧ 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하고자 하는 전자어음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60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.</u></p>	<p>항 신설</p> <p>항 신설</p>
<p>제24조 ~ 제44조 (생략)</p>	<p>제24조 ~ 제44조 (좌동)</p>	